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03282
----------	-------

유만희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4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최근 한강공원 내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
- 한강공원은 수상활동, 체육활동, 산책,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,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생활 중심 공간으로 최근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재 한강공원에는 CCTV·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별·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,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이에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한강공원 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,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